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2023.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작성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02- 2670-9115)
- 이슈 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순 서〉

1. 들어가며 ----- 4쪽
2. 중대재해 80% 발생 50인(억)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은 증가, 50인(억) 미만은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용 ----- 5쪽
3.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억)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의 포기 --- 8쪽
 -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시정조치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를 적용유예 하는 것
 - 2) 50인(억)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불가능한가?
4.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 처벌에 차등 적용 법률 사례 전무 --13쪽
5. 50인 미만 사업장 경영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가능? ---14쪽
6.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 --- 18쪽
7. 노동부 실태조사
법 시행 전 필요한 조치로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 20% --- 23쪽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투자 확대 및 기업의 인식 변화 --- 30쪽
9. 법의 확대 강화가 노동자 시민의 여론, 중소기업 80% 법 찬성 ---32쪽
10.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은 적용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쌍
끝이 전략 ----- 33쪽

●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건 기각 결정문

〈요약〉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되자,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로 무력화
-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 법 제정 후 감소추세였으나 개악 추진 이후 증가추세. 2022년 전체 사고사망 (46명), 50인 미만 (37명) 모두 증가. 50인 이상 사고 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도 적용유예 되는 것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로 실명피해 추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손해배상 별도 소송 4년소요
 - 2016년 화재 발생, 보험금 사기로 약 7억 착복한 세일전자, 2019년 화재로 9명 사망. 법 위반 밝혀졌으나, 사업주 관련 없다며 집행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 전담 인력, 산보위 설치 운영 적용 대상 아님. 예산, 인력등 하한액 기준 없음.
 -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등 중소기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안전보건 전문가도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환경범죄 단속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법을 비롯 국내외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 산업안전보건법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 50인(억) 미만 사업장 대표이사 처벌도 4년간 249건 분석 중 실행은 5명에 불과함.

3. 노동부 조사 법상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1,442개 사업장 조사
- 법상 의무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2%, 안전보건 체계 이미 구축했거나, 내년까지 가능하다. 53%.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에 불과함.
- 안전교육 실시한다 91%,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4.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 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 법 시행전 불가능하다 응답이 30%대 였던 50인 이상 기업. 법 시행 후 현장의 변화
- 2023 대한상의 조사 법 시행 100일 대비 1년 6개월 만에 담당부서 설치 45.2%에서 75.5%로 증가. 전담인력 둔 기업 66.9%로 2배 증가. 법 이행하고 대응 가능 기업 61.3%로 2배 증가
- 중처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관리자 안전의식 향상
- ‘선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위험작업 거부권,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 확대

5.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 의뢰 한국 궤협 조사 중소기업 .1000곳 중 법 찬성 80%
- 2022년 중대재해 전문가 넷 667명 전문가 조사. 5인미만 적용확대해야 한다 77%
- 2023년 한국비정규 센터 2,000명 대상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82%. 사용자도 72.6% 찬성, 법의 처벌 수준 완화 반대 전체 72.4%, 사용자도 64.5% 반대

6.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 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400건 이상이나 현재 기소는 30건 이내, 1심 판결은 10건 미만.
- 특히 7건 8명 사망한 디엘 이앤시 등 동일기업의 반복 사망도 기소조차 안 됨.
-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아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음. 최소한 안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대한 차등을 둔 전례가 없었으나, 법 제정 이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다시 2년 적용유예 연장이 추진되고 있음.

경제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인 한국에서 매년 2,400명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참혹한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임. 15년간의 입법 운동으로 제정된 법으로 “노동자, 시민의 중대 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 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임. 국민의 71%의 찬성 (2020년 KBS 신년 여론조사) 으로 제정된 법이며, 2023년 한국비정규 센터 조사에서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가 82.2% 였음. 2022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의 일 순위는 하청 책임 전가 방지였음.

그러나, 경영계는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폄하하고 개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를 앞세운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추진되고 있음. SPL 파리바게뜨 노동자,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와 DL 이앤시 등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한 분노와 노동 시민 사회의 법 개악 반대는 지속되자 급기야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원 포인트 법안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킬러 규제> <민생경제> 운운하며 법 개악을 선도하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당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5인 미만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대해 정부도 찬성해야 한다’ 는 국회의 질의에 노동부도 중소기업부도 동의한 바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5인 미만 적용 제외 삭제는커녕 개악을 추진하고, 산자부 중소벤처 기업부는 50인 미만 적용유예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부조차 적용유예 연장 수용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지난 11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1호 사업장인 두성산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었음.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두성산업이 제기한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기각 결정함.

위헌 주장부터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주장까지 경영계와 보수 언론 및 보수 전문가의 주장은 편향적인 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과 정치 과잉으로 점철되어 왔음. 특히, 조사 대상을 편향적으로 구성하거나, 어렵다는 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 질문지와 다른 문항으로 결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통합 편향적 해석이 다수임. 이는 경영계 조사뿐 아니라 관련 정부 연구도 동일함. 답이 정해져 있는 실태조사와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 보수 경제지의 수습 곳의 일제 보도와 정치권의 활용으로 <적용유예 연장이 대세> 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 50인(억) 적용유예는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님. 대기업 중대재해는 노동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누장 기소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무력화의 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 이제 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수사, 기소, 처벌 등 법의 엄정한 집행과 법의 현장 안착을 통한 재해 감축을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에 나서야 할 것임.

2. 중대재해 80% 발생 50인(억)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은 증가, 50인(억) 미만은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용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심판 제청 기각

-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 심판 제청 기각.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¹⁾

1) 2023. 11. 03 창원지방법원 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방법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22초기1795 기각 결정)

- 법의 무력화를 위한 위헌 논란이 일정 일단락되자, 사망사고 통계와 법 시행의 효과성 여론 호도에 집중

○ 최근 3년 사고 사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노동부가 산재 통계 기준을 여러 개 만들면서 혼선을 주고 있음. 최근 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 통계> 라는 기준을 만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이 60%라고 밝힘. 그러나, 이는 노동부 감독관이 <재해조사 대상>이라는 판단이 개입된 통계이고,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실질과 다를 수 있음.²⁾
- 산업안전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³⁾ 에서 집계된 산재 사망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에 달하고, 이중 사고사망은 7,138명에 달함. 전체 노동자 기준에서는 사고 사망이 전체 산재 사망의 47%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59%에 달함.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업병 산재사망이 승인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재 사망 전체가 적용 대상이나, 노동부의 재해 조사 대상은 사고사망으로 되어 있음. 사고 사망으로 한정해도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 노동자는 7,138명으로, 사고 사망 전체 노동자의 76%에 달함.
- 최근 3년간 (2020년~2022년) 사고 사망은 전체 사고 사망의 80%에 달함.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합 재구성]

연도	산재 사망	사고 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비율
2013-2022	19,860	9,380	7,138	76%

- 2) 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통계’ 를 별도로 산출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60%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감독관의 재해조사 대상 판단> 이라는 기준임. 사고 사망은 산재 신청과 승인이 평균 15일이므로, 사고 사망 증감의 추이 분석에는 영향 없음.
- 3) 노동부는 2012년 통계 기준을 변경. 산업안전공단 발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는 변경 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재사망 통계가 있음. 이에 따르면 매년 평균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동 분석자료에는 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 변경 전 통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변경된 통계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과 사고사망 통계를 기준으로 통합 구성함.

년도	사업장	노동자	산재 사망	50인 미만	사고 사망 전체	50인 미만
2022	2,976,026	20,173,615	2,233	1,372	874	707
2021	2,876,635	19,378,565	2,080	1,359	828	670
2020	2,719,308	18,974,513	2,062	1,303	882	714
2019	2,680,874	18,725,160	2,020	1,245	855	660
2018	2,654,107	19,073,438	2,142	1,285	971	745
2017	2,507,364	18,560,142	1,957	1,148	964	736
2016	2,457,225	18,431,716	1,777	1,077	969	705
2015	2,367,186	17,968,931	1,810	1,062	955	702
2014	2,187,391	17,062,308	1,850	1,078	992	717
2013	1,977,057	15,449,228	1,929	1,116	1,090	782
총계			19,860	12,045	9,380	7,138

[최근 3년간 산재 사망 통계 /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년도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전체	50인 미만
2022	2,233	1,372	874	707
2021	2,080	1,359	828	670
2020	2,062	1,303	882	714
총계	6,375	4,034	2,584	2,091
비율		63%		80%

○ 법 제정 후 감소, 개악 추진 이후 증가. 전체(46), 50인 미만 (37명)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은 전년 대비 전체 노동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고 사망이 감소함.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이 추진된 2022년은 전체 노동자(46명), 50인 미만 사업장 (37명) 모두 사고 사망 증가.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50건 이상이나 기소 30건 미만, 판결 10건 미만으로 법 집행 자체가 미미한 상황으로 집행 효과 거론 자체가 불가능. 법 시행 효과와 사고 사망 증감을 단기적, 즉자적 연계도 어불성설이며, <재해조사 대상 조사> 라는 적용 대상 기준도 불분명한 통계를 연계하는 방식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3.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억)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의 포기

1)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를 적용 유예 하는 것

-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 규정함.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6개월에 1회 안전점검, 6개월에 1회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같은 기본 조치도 적용을 연기하는 것임.
- 정부, 지자체에서 점검 결과 내린 시정명령 이행조차도 적용 연기되는 것으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것임.

○ 제2의 메탄올 실명 청년 노동자, 화재 참사 9명 세일전자

- 2016년 인천 부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 2016년 1월 발생 확인 이후 노동부에서 메탄올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점검 진행. 한 달 뒤 인천의 한 사업장에 노동부 감독관 점검 시 메탄올 사용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노동자 실명 발생. 의사에게도 메탄올 사용을 부인.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실명하게 됨.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4년이 걸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메탄올 사용 중지와 같은 노동부의 각종 시정조치나 명령이 형해화 되고, 제2, 제3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실명으로 귀결될 것임.
-
- 2019년 인천 남동공단의 세일전자에서 화재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세일전자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남. 세일전자는 2016년 화재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보험금을 부풀려 총 6억7천만원을 가로챈. 2019년 당시 세일전자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2개월 전 소방시설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법원은 소방 및 전기시설 관리에 직접 연관이 없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재해가 발생해도 재발방지 대책 없이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했던 제2, 제3의 세일전자도 처벌하지 못함.

○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경영계. 적용이 연기되면 기본 조치 이행도, 정부의 점검, 감독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중대 재해 예방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2. 전담 조직을 둘 것 (50인/억 미만 해당 없음)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할 것 4.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재해예방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 위험 요인 개선) 5.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 줄 것,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부분 적용) 6. 산안법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활동시간 보장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담당자만 해당 됨)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8.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점검 (작업중지등 대응조치,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단독 기업일 경우 적용 안 됨. 하도급인 경우가 많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의무 이행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면 인력이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 이행 필요한 조치 할 것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 실시 교육에 대해서 이행의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할 것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		

2) 50인(억)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불 가능한가?

-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들어 적용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전담 조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활동 시간 보장의 경우도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적용됨. 도급, 용역 시의 기준 마련도 하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음.

[법 4조 1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방안]

내용	적용 여부 및 방안
경영방침 설정	- 기본 사항, 가훈, 교훈과 같이 사훈을 두면 가능함.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 50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없음
유해위험요인 점검	- 형식 제한 없음. 위험성 평가 하면 같음 - 5월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 간단 체크리스트법 가능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하한액 기준 없음. (예방예산 편성은 기본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권한과 예산, 업무수행 평가	- 관리 감독자, 2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일부 적용 . 업무 수행 평가는 근무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적용 대상 아님. - 안전보건 담당자 20인 이상 제조업 등 일부 적용(전문 인력, 전담 인력 아님) -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실시 중임.
종사자 의견 수렴 (산보위, 도급사업 협의체로 같음)	- 산보위 등 적용 대상 아님. 도급사업 협의체 적용되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원청으로 도급 주는 비율 낮음. - 종사자 의견수렴 형식 규정 없고, 조건에 따라 운영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 정부, 업종별 표준 있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동
하도급 안전, 공기 등 기준	- 원 도급인 경우 적용. 대부분 단독 사업장이거나 하청

-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된 조치이거나, 기본 조치여서 적용유예 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 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임.

-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은 50인(억) 미만은 적용되지 않음. 노동부는 이미 안전관리자등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종사자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시 중임.
-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2023년 5월 고시가 개정되어 작은 사업장은 <체크리스트 방식>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나 양식을 대폭 완화했으며, 업종별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나 중소기업용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음.
- 그 외 규정도 노동부나 각종 단체에서 매뉴얼이나 표준안이 마련 배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공정이나 조직이 복잡하지 않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3년이 되도록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용 유예의 연기의 실효성은 없을 것임.
- 노동부는 안전 컨설팅 사업 실시율을 제기하고 있으나, 컨설팅 실시가 체계 구축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음. 50억 미만 건설 현장은 공사 기간도 짧고, 수개월마다 새로이 생기는 현장이고, 제조업도 매년 신설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사업의 완료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더라도 노동부의 1년 최대 실시 건 수는 16,000개 내외임. 50인 미만 사업장 약 70만- 80만개 대상으로 1회라도 실시하려면 수십 년 소요, 재정도 인력도 불가능.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임.
- 지난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동부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실효성이 낮았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면 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요구도 낮아질 것임. 법을 적용하면서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고, 컨설팅이 실제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사업도 진행되어야 함. 현재 실시되는 컨설팅은 기업에 1-2회 방문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임.
- 한국노총이 11월24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약 3,100만원이었고, 소요 기간은 평균 약 3개월 내외였음.
- 이에 다수의 안전보건 전문가 들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게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고, 적용 유예 연장은 기업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은 조건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가 의견>

[정혜선/카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부터 준비할 시간을 2년을 더 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업주가 얼마나 예방하느냐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2년 유예해도 마찬가지 - 2023년 11월25일 스트레이트 방송 보도]

[이명구/울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 부소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준수사항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고, 그 이외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2023년 11월15일 국회 토론회 토론문]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장]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넘게 발생한다. 가장 위험도가 큰 작업장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감독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도 2년을 더 유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법 준수 의지가 없는 기업이 2년 뒤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지 보장할 수도 없다. 정치권은 전면적 시행유예 시도로 혼선을 초래하기 보다 기업이 법 준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도와야 한다. - 2023년 9월25일 한겨레 왜나면 기고

[한기운 / 사]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그 동안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들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해 조직과 인력보강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경제단체는 법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대두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기대효과를 도외시한 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따른 부작용만을 앞세워 법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3년의 시간을 준 만큼 본격 법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보다는 제도의 운영을 통한 명과 암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23년 11월23일 중부일보 기고

4.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처벌에 차등 적용 법률 사례 전무

○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사업장 규모 따른 적용 유예 없음

- 노동관계 법령은 적용 유예 등의 차등적 적용이 있으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령 중 차등 적용 법안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에 대한 처벌도 도입된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었으며, 여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동일함.
- 국내 법령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하한형을 두고, 처벌 양형도 높은 법안도 도입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음. 환경범죄 단속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법령 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은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어떠한 차등 적용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령도 징역형에 사업장 규모 차등은 없음. 벌금형인 경우 매출액 대비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매출액이 큰 기업에게 더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검. 한국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유예가 예외적인 경우임.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내 안전관계 법령 주요 내용>

법명	주요내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 위해 혹은 상수원 오염 :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 위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등으로 규정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그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 - 위 각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50인 미만 사업장 경영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가능 ?

○ 현장의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확대

-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구분하였음. 50인 미만이지만 설비, 기계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원청은 소수의 관리자만 두고, 수 백명의 하청, 소사장제, 특수고용 노동자를 쪼개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 시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장 현실과 괴리되는 것이며, 쪼개기 기형적 계약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 사업장이 나 원청이 50인 미만이면서, 수 백명의 노동자를 특수고용으로 고용한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됨.

- 최근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 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배달 노동이 대표적인 사례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제공자의 중대재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속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일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음. 50인(억) 미만 사업장 법 적용유예가 연장되면 날로 증가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숨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2배 이상,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노동부>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중 전과 미상을 제외하고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수가 그렇지 않은 피고인의 수의 약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함. 당시 보고서에서 2016년의 경우 초범에 대한 재범의 비율이 97%,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이 65%에 달하고, 이러한 비율은 형법 범죄를 종합한 전과자 비율에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이 43%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이 통상 형사범죄 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음.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 출처 범죄분석 (대 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1 산업안전공단]

년도	계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17	7,285	5,278	482	1,525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2018	7,442	5,734	359	1,349	355	307	205	154	90	66	37	21	114
2019	8,923	7,118	385	1,420	367	305	211	162	93	74	52	32	124
계	23,650	18,130	1,226	4,294	1,193	912	662	473	284	224	148	85	352
비율	100	76	5	18	5	3.8	2.7	2	1.2	0.9	0.6	0.3	1.4

- 그러나, 2021년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은 97%로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76%로 2016년 대비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3년간 4범도 473명 이고, 9범 이상도 352명에 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가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임.

○ **사회적 지탄과 양형기준 조정에도 여전한 숨방망이 처벌**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2명 실형, 평균 벌금 488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낮은 형량과 벌금의 문제는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사회적 지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숨방망이 처벌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0 산업안전공단]

년도	징역형	금고형
2018	220	83
2019	233	62
2020	184	36
형의 평균 기간	7.53 개월	7.24개월
실형 선고	28명. 4.4%	9명. 5%
집행유예 비율	95.3%	95%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연인 벌금(만원)	329	415	411	443	420	462	437	423
법인 벌금 (만원)	346	410	444	501	524	515	509	515

- 2018년에서 2020년까지 1심 법원 자유형 선고 판결은 징역형 평균은 7.53개월, 금고형은 7.24개월 임. 실형은 3년간 징역형 4.4%, 금고형 5%에 불과해. 집행유예 비율이 95% 내외임.
- 벌금도 2013년 대비해서는 증가추세이긴 하나, 2020년 자연인 벌금이 423만원, 법인 벌금이 515만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모두 성립한 사례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8년 74건에 평균 벌금은 629만원이었고, 2019년에는 76건에 벌금 580만원, 2020년에는 64건에 벌금 569만원이 평균 벌금이었음.
-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 판결문 192건 분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은 111명에 대해 평균 7.37개월 징역형 선고. 금고는 7.4개월 징역형중 1.8%인 2명에게만 실형 선고, 금고형은 모두 집행유예였음. 자연인 평균 벌금은 488만원, 법인 평균 벌금은 599만원이었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 적용 성립 시 징역형 평균은 8.02개월이고, 벌금은 자연인 629만원, 법인은 727만원임.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징역형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양형기준이 없는 벌금만 일부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산안법 처벌의 48.7%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노동자 처벌도 수 백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판결문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누가 처벌되었는가?>를 명확히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찾기 어려움. 판결문에 다양한 직급과 단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전체 판결문 분석이 아니라 <입수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제한적임.
- 2021년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심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의 48.7%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통상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이 관리책임자임. 동 연구보고서의 판결문 직책에 따른 분류표를 보면 피고인의 직책이 <대표> 혹은 <대표이사>로 적시 된 것은 2018년에는 피고인 963명 중 6개 빈도, 2019년에는 954명 중 5건의 빈도, 2020년에는 709명 중 7건의 빈도임.
- 경영계의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동 연구보고서의 2018년에는 업무종사자 88명을 비롯하여 장비기사, 실무책임자, 직원, 안전관리자 등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 약 100여명이 피고인의 직책임. 2019년 판결문에서도 업무 종사자 47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33명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 말단 직원 약 230여명이 피고인의 직책임. 2020년 판결문에서도 업무 종사자 25명을 포함하여 직원, 팀장, 관리감독자 등 다양한 이름이 말단 관리자 80여명이 피고인의 직책임.
- 이는 판결문의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 산안법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병기된 것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만 처벌 받는다>라는 식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임. 그동안 실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말단 직원 등이 대부분 처벌받아 왔다는 것임.
- 2023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인 <50인 미만 사업장 산안법 위반 대표자 형사 처벌 여부> 에서는 2018년 12건, 2019년 95건, 2020년 69건의 <입수된 판결문> 분석을 진행함. 3개년도 입수된 판결문 분석에서 대표자의 77%가 처벌받았다고 분석됨. 입수된 판결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앞선 연구 보고와 비교해 <대표, 대표이사>의 구분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교 등이 더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1심까지 판결에 소요 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본다면 2017년 사고 사망 736건,

2018년 745건, 2019년 660건, 2020년 714건에 비해. 접수된 판결문은 249건임. 이에 대표자의 처벌 분석에 앞서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결에서 아예 처벌받지 않거나, 약식기소로 된 비율부터 확인될 필요가 있음.

[년도별 산재사망, 사고사망 노동자]

[2023년 연구보고서 분석 대상 판결문]

년도	50인미만 산재사망	50인미만 사고사망
2020	1,303	714
2019	1,245	660
2018	1,285	745
2017	1,148	736

년도	분석 1심 판결문
2021	2
2020	69
2019	95
2018	12

- 동 연구보고서에서 대표자 처벌이 77%에 달하고 있으나, 대표자에 대한 처벌 선고에서 실형 선고는 4년 동안 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다수임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 처벌 선고형 >

처벌 선고형 유형	2018	2019	2020	2021
징역(금고)	0	3	2	0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5	43	39	1
징역, 집행유예, 벌금	1	6	7	0
벌금	6	42	21	1
계	12	95	69	2

[2023년 50인 미만 기업 산안법 위반에 따른 규율현황 분석/ 한국 노동법학회]

6.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의 문제점

1) 법 시행 전 ‘법 준수 가능하다’ 50인 이상 31.9%. 50인 미만 59.2%.

노동부 연구 조사에서는 법 준수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 2021년 법 시행 전에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경제단체의 조사에서 법 준수 가능하다 라는 응답이 시행 4개월 전에는 31.9%, 1개월에는 46.3% 였음.
- 2023년 법 시행 9개월 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법 준수하

고 있거나 준수 가능하다 59.2%이고, 비슷한 시기 노동부 발주로 한국 안전학회 조사에서는 법 준수 의무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81%임. 특히 <체계>에 대한 질문인 안전보건 체계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갖출 수 있다 도 53%임.

- 법 시행 전 준비에 대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기업보다, 50인 미만 기업의 준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제단체들이 조사 대상과 설문 문구, 조사 결과에 대한 편향적인 발표와 보수 경제지의 일방적 보도 확산으로 여론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음.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경총, 중기중앙회	2021.09	50인 이상 314개 기업	- 법 시행일까지 의무 준수 가능 여부. - 전체 가능함 31.9% 어려움 66.5%
중기중앙회	2021.12	중소제조업 50인 이상 322개사	- 법 시행일에 맞추어 의무사항 준수 가능 여부 / 가능 46.3%. 불가능 53.7%
중기중앙회	2023.04	50인 미만 기업 250개사	- 법 준수하고 있거나, 시행일에 맞추어 준수 가능 할 것이다. 59.2%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2023.03	50인 미만 1,442개사	- 안전보건 준수 의무 모두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하기 위한 체계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갖출 수 있다 53%

2) 법 시행 어렵다 4월에는 40% VS 8월에는 80% 경영계 조사 신뢰성 문제

(1) 답정너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보수 언론 집중 보도로 프레임 형성

- 중기중앙회의 2023년 4월 조사는 시행일에 맞추어 법 준수 어렵다 40%이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3.2%임. 8월 조사는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5%를 합산하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발표하고, 보수 언론이 집중보도함.
- 동일한 조사기관 임에도 4월 조사는 업종이나 지역 구성 비율을 분배했으나, 8월 조사는 93%가 제조업이고, 조사 대상의 64%가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위한 실태조사 의도가 드러나 신뢰성을 갖기 어려움. 가장 최근 조사인 11월 대한상의 조사는 조사 대상과 설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태 조사 비교〉

구분	4월 조사	8월 조사
법 준비	법 준수 가능 59.2 % 전혀 불가능 3.2 %	준비하지 못했다 80%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적용 시기	법 준수 가능 제외 1년 연기 41.2%	연기 필요하다 85.9% 기간 질문 없음
조사 대상	제조, 비제조 각 50% 수도권, 전국 각 50%	제조업 93%
응답자		대표이사 41% 임원 23%

- 중기 중앙회 4월 조사에서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법 준수하고 있다는 60.4%이며, 아직 법 적용 9개월 전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 59.2%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조사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2023년 4월 조사에서는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가 59.2% 였고,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는 3.2%임. 그러나, 8월 조사에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 라는 응답이 29.7%이고, 상당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응답 50.35%를 합산하여 80%가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통합 발표하고, 보수 언론이 집중 보도함.
- 법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도 중기중앙회 4월 조사에서는 1년 유예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8월 조사에서는 시기는 제외하고 연기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만 하여 85.9%의 응답 결과에 질문에는 없었던 2년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음.
- 실태조사 세부 구성을 보면 4월 조사에서는 업종이나 수도권과 지역을 안배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나, 8월 조사에서는 93.3%가 제조업이었고, 설문에 응한 대상도 대표이사 41.5%, 임원이 23.7% 였음. 이는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설계가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2) 준비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VS 연기하면 인력확충 하겠다 5.4%

- 중기 중앙회 등의 2023년 8월 조사에서는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적용유예 연장의 필요한 이유도 안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법 적용이 유예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안전교육

실시, 보호장비 확충, 자동화 설비투자를 꼽고 있고,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은 5.4%, 안전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는 3.5%만 답변하고 있음. 결국 적용 유예가 연장되어도 근본 문제 해결로 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한국안전학회 조사에서 이미 실시율이 높게 나타난 안전교육(91%), 보호장비 확충을 적용유예 연장시 계획에 응답하고 있고, 컨설팅 실시를 위해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컨설팅 실시도 13.7%만 응답하고 있음.

[중기중앙회 2023년 8월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2개)

구 분	사례수 (명)	전문인력부 족	예산 부족	의무이해 어려움	현장 근로자 비협조	기타
전체	(892)	35.4%	27.4%	22.8%	9.8%	4.6%

2-2)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되는 경우 조치 계획 (복수응답 2개)

구 분	사례수 (명)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전체	(892)	38.0%	14.6%	18.9%	13.7%

구 분	사례수 (명)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안전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	기타
전체	(892)	5.4%	3.5%	4.0%	1.8%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의 설계 및 문안’에 조사의 편향된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제 실태조사 문안과 방향성이 다른 분석 결과나, 데이터의 통합이 있다는 것임. 왜곡된 실태조사 --> 왜곡된 분석 결과와 보도자료 배포 --> 보수 언론의 기사 물량 쏟아내기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프레임 을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있음.

- 지난 10월 말 진행된 한국노총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토론회에서 노사를 제외하더라도, 토론자로 참석한 안전보건 전문가나 중대재해 담당 로펌의 토론

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 제출했으나, 전혀 보도되지 않았음.

조사기간 및 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2023.4월 중기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체 500개 기업 - 5인- 50인 미만 250개사/ 50인- 300인 기업 250개사 - 업종, 지역 배분 구성 	<p>○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법 준수하고 있다. 60.4%. 일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25.2%.. 거의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8.4%. 전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1.2%</p> <p>○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 59.2%. 불가능할 것이다 40.6% (전혀 그렇지 않다 3.2%)</p> <p>○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적용 시기 의견 1년 유예 41.2%. 2년 유예 16.7%, 3년 유예 15.7%, 4년이상 유예 26.5%</p> <p>○전체대상 : 사업주 처벌방식 개선 벌금형으로 개선 8.2%, 처벌 수준 완화 6.4%, 상습 반복사망 형사처벌 43%, 의무내용 명확화 41.6%. 위험성 평가 연1회 이상 실시 70.2%, 실시한 적 없음 13.6%, 2-3년에 한 번 실시 16.2%</p> <p>○50인 미만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실시 60.8%</p> <p>○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인건비 지원 사업 활용의사 78.8%</p>
2023.8월 중기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892개사 - 제조업 93.3% - 직급 대표이사 41.5%, 임원 23.7%, 	<p>○모든 준비를 마쳤다. 1.2%, 상당 부분 준비를 마쳤다. 18.8%,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5%,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 29.7%</p> <p>○모두, 혹은 상당 부분 준비를 마쳤다 (응답자 직위별 차이) 대표이사 16.5%, 임원 17%, 부장 25.7%, 직원 27.3%</p> <p>○준비하지 못한 이유에서 의무이해 어려움은 22.8% 전문인력 부족 35.4%, 예산 부족 27.4%</p> <p>○연장 필요하다 85.9%, 필요하지 않다. 14.1%</p> <p>○적용유예 연장되지 않을경우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 16.5%</p> <p>○유예기간 연장되는 경우 조치계획 : 근로자 교육실시 등 안전문화 정착 38.0%. 개인보호 장비 확충 14.6%, 노후시설 보완 등 설비 투자 18.9%, 안전컨설팅 진행 13.7%. 안전보건 담당 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5.4%. 안전전담 조직 신설 혹은 기존 조직 확대 3.5%</p>

7. 노동부 실태조사

법 시행 전 필요한 조치로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 20%

○ 노동부 연구 조사 법 준수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체제 구축 가능하다 53%. 법 적용 전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p>◆ 법인의 경영책임자(사장, 대표이사 등) 또는 사업주(개인에 한함)가 응답하시고, 팩스 또는 이메일(스캔 파일 또는 사진)로 응답지를 회신(-3/31(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팩 스 : 051-629-6463 이메일 : suhyun20@gmail.com</p>			
<p>중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관리 준비 현황 설문조사</p> <p>본 조사는 고용노동부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사)한국안전학회 주관 하에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법령 인식 및 준비상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p>			
회 사 명	대표전화	업 종	①() 제조 ②() 건설 ③() 운수 ④() 도소매·서비스·보건 ⑤() 기타
소 재 지 (사군구)	주요품목/서비스	상 시 근 로 자	①() 5-9인 ②() 10-19인 ③() 20-29인 ④() 30-49인 ⑤() 기타
도급·위탁·용역 등 하청여부		①() 사내하청(수급)업체 ②() 사회하청업체 □ 유지보수/정점 □ 운송 □ 위탁주요생산 □ 기타 ③() 해당 없음	
<p>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아울러 '21.1.27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되었고 '24.1.27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p>		<p>사업장 안전관리</p>	
<p>안전 법령 인식 및 이행</p>		<p>① 귀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①-1~3 답변) ②없다 (→ ② 답변)</p>	
<p>① 중대법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알고 있다 ②들어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전혀 모른다</p>		<p>③-1 산업재해가 있었다면 부상·질병 정도는 어떨습니까? (중복가능) ①경미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근로 지보 수준) ③사망사고 발생 ②중대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입원 지보 수준)</p>	
<p>② 아래 나열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알고 계십니까? ①모두 알고 있다 ②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전혀 알지 못한다</p>		<p>③-2 산업재해 발생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중복가능) ①재해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 ②종사자 안전보건교육 ③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④안전보건예산 증액 ⑤안전연력 배치 및 증원 ⑥작업 전 종사자 대상 안전 유의 사항 주지 ⑦별도 조치 없음</p>	
<p>③ 중대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재해 예방방지대책 수립·이행 ②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 이행 ③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④안전보건 전달조직 설치 ⑤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점검 ⑥안전보건 예산·예산·집행 ⑦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⑧안전보건 임의 배치 ⑨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에 따른 개선조치 ⑩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마련·조치 ⑪안전보건교육 실시·점검 및 조치 ⑫관계수급인 등의 평가기준·절차 등 마련·점검 ⑬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p>		<p>③-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설비고장 및 노후화 ②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③근로자 작업 전문성 미확보 ④안전보건 예산 부족 ⑤안전보건관리의 부족 ⑥안전보건 투자재정 부족 ⑦기타 (원인 작성 -)</p>	
<p>④ 귀사는 중대법 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습니까? ①이미 모두 갖추었다 (→ ① 답변 시 ④도 미응) ②전체 준비 중이다 ③준비하지 않고 있다 (→ ②-③ 답변 시 ④-1도 미응)</p>		<p>④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운영 (→ ④-1 답변) ②미운영 (→ ④-2 답변)</p>	
<p>④-1 귀사는 내년 '24.1.27. 법 시행 전까지 위의 중대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출 수 있습니까? ①그렇다 (→ ④도 미응) ②그렇지 않다 (→ ④-1-1도 미응)</p>		<p>④-1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특정 직원이 겸직 (명) ②전담자 지정 (명) ③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행</p>	
<p>④-1-1 중대법상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안전 담당 인력 부족 ②안전조치 요구 수준에 과도함 ③외부 인력이 너무 많은 ④준비 기간이 부족함 ⑤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⑥관심이 없음 ⑦기타 (이유 작성 -)</p>		<p>④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한 물품이 있으십니까? (중복가능) ① 없다. ②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등) ③ 안전보건표지 ④ 안전헬스, 경보 등 방호장치 ⑤ AED 등 응급구급장치 ⑥ 기타 (구매물품 작성 -)</p>	
<p>④ 귀사는 중대법 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습니까? ①이미 모두 갖추었다 (→ ① 답변 시 ④도 미응) ②전체 준비 중이다 ③준비하지 않고 있다 (→ ②-③ 답변 시 ④-1도 미응)</p>		<p>④ 귀사에서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수행 (□정기적 / □비정기적) ②미수행</p>	
<p>④-1 귀사는 내년 '24.1.27. 법 시행 전까지 위의 중대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출 수 있습니까? ①그렇다 (→ ④도 미응) ②그렇지 않다 (→ ④-1-1도 미응)</p>		<p>④ 귀사는 종사자로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견을 청취하십니까? ①정기 (□정기적 / □비정기적) ②미청취</p>	
<p>④-1-1 중대법상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안전 담당 인력 부족 ②안전조치 요구 수준에 과도함 ③외부 인력이 너무 많은 ④준비 기간이 부족함 ⑤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⑥관심이 없음 ⑦기타 (이유 작성 -)</p>		<p>④ 귀사는 비상대책과 구조조치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p>	
<p>④ 위 안전보건 의무 (④-1 문항 하단 박스 내 13개 항목)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번호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p>		<p>④ 귀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까? ①보고 받는다 ②보고 받지 않는다</p>	
<p>④ 위 안전보건 의무 (④-1 문항 하단 박스 내 13개 항목) 중 귀사가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번호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p>		<p>④ 귀하는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습니까? ①알고 있다 (→ ④-1 답변) ②모른다(→ ④-2 답변)</p>	
<p>④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법의 적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기술·경영 등 교육·컨설팅 ②재정지원 ③중대법 적용유예·제외 ④지별·수준 완화</p>		<p>*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p>	
<p>④-1 순위: _____ ② 순위: _____ * 기타의견 (별도 조치 작성): _____</p>		<p>④-1 귀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수행 (□정기 수행 / □비정기 수행) ② 미수행 (□과거 수행 / □과거 미수행)</p>	
<p>④ 중대법 위반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경우 귀사의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습니까? * 중대법 제6조 ①제4호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같이 집행할 수 있다. ①경영활동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이 있다. ②경영상 불만 등 일부 영향이 있다 ③전혀 영향이 없다</p>		<p>④ 기타 의견</p> <p>④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p>	
<p>④-1 순위: _____ ② 순위: _____ * 기타의견 (별도 조치 작성): _____</p>		<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내용과 적용 기준 작성요령 등은 문명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그림 III-1〉 개발 설문지

- 8 귀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8-1~3 답변) ②없다 (☞ 9 답변)
- 8-1 산업재해가 있었다면 부상·질병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가능)
 ①경미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기본 치료 수준)
 ②중대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입원 치료 수준) ③사망사고 발생
- 8-2 산업재해 발생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중복가능)
 ①재해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 ②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③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④안전·보건예산 증액 ⑤안전인력 배치 및 증원
- ⑥작업 전 종사자 대상 안전 유의 사항 주지 ⑦별도 조치 못함
- 8-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설비고장 및 노후화 ②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③근로자 작업 전문성 미확보
- ④안전조치 어려움 및 부족 ⑤안전관리인력 부족 ⑥안전보건 투자재정 부족
- ⑦기타 (원인 작성 →)
- 9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운영 (☞ 9-1 답변) ②미운영 (☞ 10 답변)
- 9-1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특정 직원이 겸직 (명) ②전담자 지정 (명)
- ③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행
- 10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한 물품이 있으십니까? (중복가능)
 ① 없다. ②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등) ③ 안전보건표지
- ④ 안전펜스, 경보 등 방호장치 ⑤ AED 등 응급구호장치
- ⑥ 기타 (구매물품 작성 →)
- 11 귀 사에서는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수행 (☐정기적 / ☐비정기적) ②미수행
- 12 귀 사는 종사자로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견을 청취하십니까?
 ①청취 (☐정기적 / ☐비정기적) ②미청취
- 13 귀 사에는 비상대피와 구호조치 관련 방법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14 귀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까?
 ①보고 받는다 ②보고 받지 않는다
- 15 귀하는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 15-1 답변) ② 모른다(☞ 16 답변)

*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15-1 귀 사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수행 (☐정기 수행 / ☐비정기 수행) ②미수행 (☐과거 수행 / ☐과거 미수행)

-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안전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 사업장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음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제 설문문항과 분석에 사용된 문구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밖에 안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도표만 있을 뿐 조사결과 분석에 아예 언급이 없음. 이에 실태조사 질문지와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 건수와 통계를 재 정리함.
- 경영계처럼 이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부 발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대상도 1,442개 사업장으로 규모도 가장 많고,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등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설계하고 진행한 조사임. 그러나, 정작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나 토론회는커녕. 국회에 제출한 적용유예 연장 의견서에는 경영계 조사 결과만 인용하고 있음
- 2023년 3월로 법이 시행되기 약 10개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라는 59%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갖추었거나 준비 중인 50인 미만 기업이 81%에 달하는 것임.
- 다른 조사가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과 달리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함. 이에 대해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3%이고 어렵다는 응답은 47%였음.
- 다른 조사의 동일한 질문인 <법 준수가 가능한가>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50인 미만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임에도 53%가 가능하다고 응답
- 업종별 규모별 데이터를 보면 도소매 서비스 보건업의 경우에는 이미 갖추었거나 법 시행 전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다 높게 나왔음. 제조업의 경우 10인 이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이 다 높게 나왔고, 9인 미만의 경우에만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많음.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인 경우 단기 공사일 경우가 많아, 법 준수도 아니고 <체계구축> 이라는 질문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임. 그러나, 9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도 체계를 이미 구축했거나 가능하다는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III-4] 시행('24.1.27)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가능 여부(업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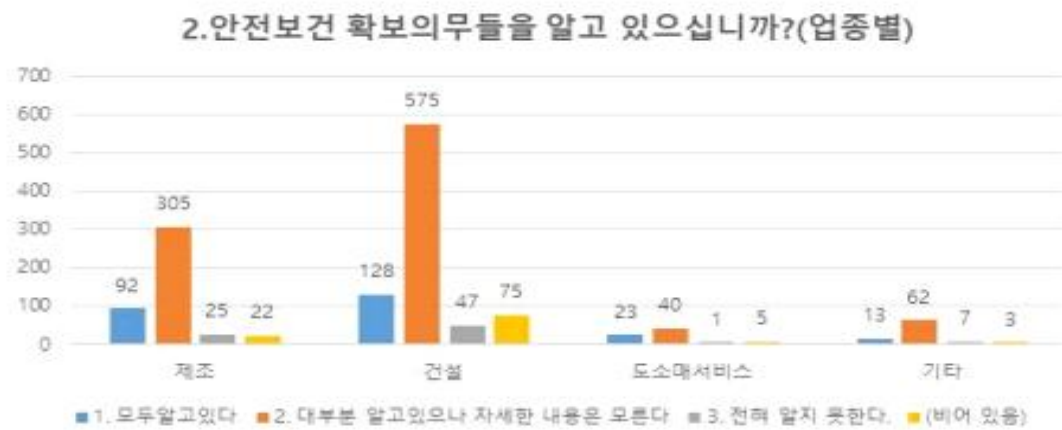
		체계구축 가능 (3. 이미 갖추었다 + 3-1. 그렇다)	체계구축 불가능 (3-1. 그렇지 않다)
		제조	5~9인
	10~19인	76	56
	20~29인	53	32
	30~49인	54	24
건설	5~9인	235	269
	10~19인	74	93
	20~29인	27	15
	30~49인	22	14
도소매 서비스 보건	5~9인	21	7
	10~19인	17	4
	20~29인	8	2
	30~49인	5	1
기타	5~9인	20	21
	10~19인	13	5
	20~29인	5	2
	30~49인	5	1
무응답		8	
총계		696(53%)	606(47%)

- 이는 경제단체가 법 시행 4개월 전인 2021년 9월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법 준수 가능함 31.9%, 법 시행 1개월 전인 2021년 12월 조사에서 준수 가능함으로 응답한 46.3%보다 높은 비율임.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9개월 전인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에서 59.2%가 이미 법 준수하고 있거나,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경총, 중기중앙회	2021.09	50인이상 314개 기업	- 법 시행일까지 의무 준수 가능 여부. - 전체 가능함 31.9% 어려움 66.5% - 50인- 100인 : 가능함 20.3% 어려움 77.3%,
중기중앙회	2021.12	중소제조업 50인 이상 322개사	- 법 시행일에 맞추어 의무사항 준수 가능 여부 가능 46.3%. 불가능 53.7%
중기 중앙회	2023.04	50인미만 기업 250개사	- 법 준수하고 있거나, 시행일에 맞추어 준수 가 능 할 것이다. 59.2%
한국안전학 회	2023.03	50인미만 1,442개사	- 안전보건 준수 의무 이미 모두 갖추었거나, 준 비 중이다. 8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하기 위한 체계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갖출 수 있다 53%

- 동 연구 보고에서는 법의 13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문지에 명시하고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모두 알고 있다. 18%,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9%, 전혀 알지 못한다 6%의 응답 결과가 나왔음. 이에 대해 연구 보고 결과에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알고 있는 것은 18%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동일한 조사 결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6%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두 알고 있거나, 대부분 알고 있다가 87%로 분석하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분석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2023 노동부 한국안전학회/설문조사 결과]



○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안전 활동 보고받고 있다 75%

-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조사임에 50인 미만 기업의 91%가 안전교육 실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음 75%, 종사자로부터 의견 청취 하고 있음이 89%에 달하고 있음.
- 중대재해 감축의 중요한 제도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임. 교육, 종사자 의견 청취,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서 법의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고, 처벌 수준 완화도 16%에 불과함.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 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 (16%)로 응답하고 있어 법 적용을 전제로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에 달하

고 있음. 이 또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적용유예 연장이 낮다 라는 응답률에 대한 것보다,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 적용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복수 응답)]

조치	재정지원	컨설팅	적용유예	처벌 수준 완화
개수	982	689	557	442
비율	36(%)	25(%)	20(%)	16(%)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2023 노동부 한국안전학회/설문조사 결과]

조사기간/ 기관	조사 대상	조사내용
2023. 3월 노동부 발주 한국 안전학회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사 (업종별, 규모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13개 의무 설문지 명기.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알고 있는가 ? - 모두 알고 있다 (18%)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9% 전혀 알지 못한다. 6% ○ 중대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다. 59%, 준비하지 않고 있다 18% ○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 어렵다. 47% -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53% ○ 중대법 적용 이전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 (16%)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 중 46%, ○ 안전보건 교육 수행 91%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의견 청취하고 있다. 89%. (정기적 의견 청취 38%) ○ 비상 대피 및 구호 조치 매뉴얼 있다. 58% ○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있다. 67%

○ 50인(역)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수준이 낮고, 현재 법 시행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계나 보수 전문가, 보수 언론의 왜곡 과장에 휘둘러 적용 연기로 상당수 기업의 준비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임.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투자 확대 및 기업의 인식 변화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23년 대한상공회 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담당 부서 설치 법 시행 100일 45.2%--> 2023년 75.5%로 증가 - 안전 전담 인력 둔 기업 31.6%---> 66.9%로 2배 증가 - 법 이행 하고 대응 가능 기업 30%--> 61.3% 2배 증가
2023년5월 중기중앙회	<p><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 안전관련 예산/ 인력 증가 50인 이상 사업장 50.4% 증가 - 전혀 그렇지 않다 8.0%
2023년1월 경총 172개사 조사	<p><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예산 확대 38.3%, 유지 56.9% 감축 4.8% - 기업의 95.2%가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변 - 투자 확대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를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3.2월 이동선 오테근 연구	<p><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현장 관리자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곳. 각 30명씩 총 90명 조사. 절반 정도가 건설현장 경력이 10년 이상 - 안전시설물 훼손 시 위험을 느끼는가 노동자 중처벌 시행 전후 모두 90% 이상이 위험을 느낀다고 답변 관리자는 시행 전 63.3%, 시행 후 매우 그렇다 30%--> 76.7%로 대폭 상승 기업 측면에서 건설재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과의 안전의식 향상 의미
경향신문 2023 1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2021년 환경 안전분야에 5조원 넘는 투자 . 전경련 2022 K-기업 ESG 백서 분석 - 2021년 100대 기업 환경 안전 투자 규모 2021년 약 5조 4,400억. 2020년의 2조 9,000억 대비 87.6%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
안전신문 2023. 5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1일 국토부 국내 22개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 대상 시행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 철도 사고는 2021년 64건에서 79건으로 증가. 안전투자 집행액 2021년 2조2,427억에서 2조6,947억으로 증가, 안전투자 예산 2021년 2조4,482억에서 2022년 2조 8,515억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법 영향
현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전후로 노동자의 선제적 작업 거부권 기업 내 제도화 확산 : 삼성물산, 한국 시설공단 -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질 가동, 사측의 참여 활성화, -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실질화 사업장 사례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경제단체의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안전투자는 확대되고, 안전 전담 인력도 증가하고 있음.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법 시행 100일 당시 조사에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설치가 45.2%였으나, 2023년에는 75.5%로 약 1년 6개월 동안 30%가 증가했고, 안전전담 인력을 둔 기업도 2배가 증가했고, 법을 이행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도 30%에서 61.3%로 2배가 증가함. 이는 법의 시행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전투자와 인력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임.
-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관리자 및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법 시행 이후 기업 측면에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의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작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선 안전조치 요구. 개선 후 작업 실시> 를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작업 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부여하고, 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 하청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음.
-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영책임자의 참여도 늘고 있으며, 수 년 동안 거부했던 위험성 평가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 추세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법 개악에 대한 메시지가 연속으로 나오고, 적용 대상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수사 기소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감축은 실질화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척박한 조건에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몇 명이 증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는 몇 명이 줄었다는 알팍한 분석이 횡행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에만 골몰하는 경영계, 보수 언론과 정권의 기조에 따라 알팍한 통계를 근거로 행정실무인력 부족만 내세우며 법 적용 연기를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의무 부여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고 나서야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9. 법의 확대 강화가 노동자 시민의 여론. 중소기업 80% 법 찬성

-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리기, 무용론 언론 공세에도 노동자 시민 및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음.

- 2022년 9월 국회의장실과 헤럴드 경제 조사에서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53.9%,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 안전보건 전문가 612명 대상 조사에서는 현행 법 처벌이 부족하다가 47.4% 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는 77.1%, 중대시민 재해 대상 확대에 81.4%가 찬성함.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의 의뢰로 한국 껄럽이 중소기업 1,0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업 대상 조사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찬성이 80%였고, 찬성 이유로는 하청에 책임 떠넘기는 행위 방지가 가장 높았음.

- 2023년 노회찬 재단과 한국 비정규 센터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81.5%로 동의하지 않는다 18.5% 보다 훨씬 높았으며,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75.2%가 동의함.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82.2% 였음. 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72.4%로 동의한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64.5%는 처벌 수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2023년 2월 국민 불평등 인식 조사. 한국 비정규 센터, 노회찬 재단. 총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직종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중재법은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2.8	1.7	3.5	3.4	3.5	3.3
	동의하지 않음	21.3	16.4	24.8	14.0	11.6	15.0	15.2
	동의함	57.9	65.3	59.2	66.0	71.1	63.8	65.2
	매우 동의함	17.3	15.5	14.4	16.6	13.9	17.8	16.3
안전을 위해 중재법은 더 강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	2.8	2.2	2.7	2.4	2.8	2.7
	동의하지 않음	23.4	12.7	18.8	14.9	13.6	15.4	15.1
	동의함	51.8	57.8	52.8	55.1	57.8	54.0	55.2
	매우 동의함	20.8	26.8	26.2	27.3	26.2	27.7	27.0
중재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9.1	10.8	13.3	12.2	14.3	11.3	12.0
	동의하지 않음	37.1	54.5	45.4	52.5	51.2	53.0	51.8
	동의함	45.7	31.0	33.6	30.1	28.9	30.7	31.0
	매우 동의함	8.1	3.8	7.8	5.2	5.6	5.1	5.3
중재법의 처벌 수위는 완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	22.5	23.1	21.0	25.1	19.2	21.1
	동의하지 않음	50.8	51.6	48.4	51.6	50.7	52.0	51.3
	동의함	27.9	20.7	23.3	21.7	19.8	22.5	21.9
	매우 동의함	7.6	5.2	5.2	5.8	4.4	6.3	5.7

10.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 중대 재해처벌법 무력화 쌍끌이 전략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00건이 넘었으나, 9월말 기준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25건뿐이고, 불기소한 5건은 사유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을 남발하던 검찰은 DL이엔씨 7건, 롯데건설, 현대건설 5건, 철도공사 4건, 세아베스틸 3건 등 연속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켜 법을 무력화 하는 쌍끌이 전략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임.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 받지 않게> 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당연한 요구임.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면서도 기업의 무지에 가까운 인식, 정부의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음. 대상 사업장의 약 60%가 준비하고 있고, 법 시행을 기점으로 뒤늦게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임.

- 대상 노동자에게는 더 위험한 사업장에서 죽어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차별이며, 법 적용이 연기되면 그나마 진행되던 기업과 정부의 집중대책도 동력을 잃게 될 것임.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전체가 사문화 되어 법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한 우리 사회의 전환점을 상실하고 원점으로 회귀될 것임.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적용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 도입 및 정부지원>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임.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 요약 발췌

창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2초기1795 위헌심판제청
(2022고단14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 중략-

나.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9 사건이 계속 중인 2022. 10. 13. 이 법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중략-

3. 위헌성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당해 법률의 체계 및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서 그 법률조항의 취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각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실질 : 실제로 있는 본바탕
- 지배 :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 운영 :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 관리 :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것
- 재해 :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 예방 :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 인력 : 사람의 노동력
- 예산 :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함. 또는 그 비용

- 안전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 보건 :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 체계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 구축 :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 이행 : 실제로 행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 위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위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유지하는 일련의 관리 또는 경영체계를 마련하여 따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기업 내의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각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별 특성, 작업의 내용, 산업기술의 발전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오히려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개별 기업들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불특정의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신청 대상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신청 대상 법률조항은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또한,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신청 대상 법률조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신청 대상 법률조항은 자신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 원칙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중앙선 침범,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죄질이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음주운전 등보다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일정한 상해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

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형법 제13조, 제14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과실범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그 처벌 대상이 다르다.

○ 이러한 사정이나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3.